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제77조, 동법시행령제84조 및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 구유재산의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목적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구유토지에 소재하던 하단1파출소의 이전으로 부지 및 건물이 반환되고, 동 부지상에 위치한 햇님어린이집이 신축 이전계획에 의거하여 이전 부지가 선정되고, 신축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용도폐지후 잡종 재산으로의 이관시 구유재산을 매각하여 신축이전에 따른 대체재산의 재원확보와 더불어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입증대에 기여코자함.

○ 처분대상 재산의 표시

(단위:천원)

구 분	소재지	소유자	용도지역	지 목 및 구조	연면적(m ²)	예정가격
토 지	하단동 534-13	사하구	일 반 상업지역	대	496.2(150평)	3,000,000
건 물	구 하단 1파출소	"	일 반 상업지역	철·콘·스	115.83(34평)	65,000
	햇 님 어 린 이 집	"	일 반 상업지역	철·콘·스	328.8(99평)	

나. 을숙도 문화회관 소강당 신축

- 여성회관이 학교부지로 수용됨에 따라 그 기능(각종 강좌, 세미나, 예식 등)을 흡수 운영
- 현재 을숙도문화회관 공연장 규모로는 구민에게 양질의 문화욕구를 충족 시키기 미흡하므로 소강당을 건립 운영하므로써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대구민 문화 수준을 향상 시키고자 함
- 취득대상 재산현황

(단위:천원)

사업명	구분	소재지	면적(m ²)	구조	시설개요	소요예산
을숙도 문화회관 소강당 신축	건물 신축	하단동 1151-14	1,651	철근 콘크리트	· 지상2층- 문화회관 소강당 등	2,650,000

다. 감정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양여

- 사하구청장과 서부교육청 교육장과 양여하기로 협의한 사항을 이행하고자 함
- 양여대상 재산현황

(단위:천원)

사업명	구분	소재지	면적(m ²)	구조	시설개요	소요예산
감정초등학교 공영주차장	건물 양여	감천동 10-2	2,354.73	철근 콘크리트	· 지상1층- 공영주차장	2,716,203

3.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제84조
- 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

4. 검토의견

- 본 변경승인안은 2003. 10. 13 제114회 임시회시 2004년도에 취득할 재산을 관리계획을 수립 취득승인을 받은바 있으나 그간의 여건 변화에 따라 취득할 재산이 발생됨에 따라 취득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것으로,
- 햇님어린이집 및 구 하단1파출소 부지 매각건은 햇님어린이집 이전계획에 의거 지난 2003. 6월 제112회 임시회시 이전대상부지(당리동 309-5번지 299평)에 대한 취득승인을 받은바 있어 금번에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매각 승인을 받은후 매각하므로 신축이전에 따른 대체재산의 재원을 확보코자 하는 사안으로 구유지에 소재하였던 하단1파출소의 이전과 동부지내에 있던 기존 햇님어린이집의 건물이 누후할 뿐아니라, 도로에 인접해 있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이전코자 하여였던 것이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 을숙도문화회관 소강당 신축은 장림동 소재 여성회관이 학교부지로 수용됨에 따라, 부득불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건립부지를 물색중 마땅한 부지가없어 문화회관소강당을 건립하여 여성회관으로 활용하므로서 관리의 효율도 겸하고자 하는 장점이 있으며, 특별한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 승인하지 않을수 없는 결론이며,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익년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사항은 공유재산관리에 관한조례 제37조에 의거 익년도

예산편성전에 취득·처분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절차상의 하자를 발생케한 것에 대해서는 차후 타산지석으로 삼는 계기가 되어야 할것임.

- 감정초등학교 공영주차장 양여 사항은, 감천2동 영세민 밀집지역에 주차장이 없어 주민의 편익을 위해 2002. 2. 7 우리구와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청 교육장과 협약서를 체결하고, 총사업비 2,873,000천원(시비 940,000천원, 구비 1,933,000천)으로 건립한 것으로

협약서 제5조에 의거 사하구청장은 시설완공후 부산광역시(소관:교육청)로 무상이관 하도록 되어있으며 제6조에는 사하구청장은 설치완료 당해연도 부터 20년간 무상사용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관 해주는 것은 당연 사항이라 생각합니다.